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4월 4주차(2014.4.11-4.23)

### 요약(Summary)

#### 1. 건보공단, 담배회사 4곳 상대로 537억 담배 소송(4/14)

#### ○ 기타뉴스

-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급여비 지급 '중단'(4/17)
- 직장인 61%, 이달 건보료 12만 원 더 낸다(4/18)
- 대체치료 없는 신의료기술, 평가 前 진료 허용(4/23)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맞춤형 건강관리 '헬스온' 선보여(4/21)
- 척추전문 튼튼병원 1인1개소 의료법 첫 위반(4/23)
- 병원협회, 1회용 수술포 비용 산정돼야(4/15)
- '시장형 실거래가제' 결국 폐지...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전환(4/22)
- 약국 복약지도 위반시 과태료 30만원(4/16)
- 대응제약, 진도군약사회에 '우루사' 등 의약품 전달(4/21)
- 해고 논란 보라매병원 임신부 간호사 복직(4/23)
-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탄핵(4/19)
- 고용노동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이행 실적 발표(4/15)
-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4/11)



## 1. 건보공단, 담배회사 4곳 상대로 537억 담배 소송(4/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케이티앤지(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병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14일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 흡연 피해 소송 방침을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한국에서 개인 흡연 피해자들이 1999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5년 만에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나선 사례가 됐다.

앞서 10일 대법원이 방아무개(65)씨 등 개인 흡연 피해자 30여명이 케이티앤지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미국에서도 흡연 피해자 개인보다는 주정부 등이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과를 거둔 사실을 환기하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주),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 및 제조사(주)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소송 대리는 개인 흡연 피해자들의 '담배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남산이 맡았다.

공단이 정한 소송액 537억원은, 흡연과 관련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3가지 암(폐암 중 소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 '흡연 기간이 30년이 넘고, 그중 20년 이상은 하루 한갑 넘게 피운'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액수다. 이 3가지 암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흡연량과 흡연 기간이 긴 이들의 진료비를 우선 청구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공단은 이후 다른 환자들의 진료비로도 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sup>1)</sup>

## 1.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급여비 지급 '중단'(4/17)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심사 결과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에 따라 조사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액 지급은 보류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병원들로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간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사무장 병원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up>2)</sup>

## 2. 직장인 61%, 이달 건보료 12만 원 더 낸다(4/18)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 명은 이달 평균 12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납부액은 1조9226억원이며 환급액은 3332억원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761만 명(61.9%)은 임금 상승에 따라 이달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50%씩 납부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 1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연 소득이 500만원 올랐다면 지난해 보험료를 5.89%를 감안해 14만725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9.4%에 해당하는 238만 명은 1인당 보험료 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경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추가 보험료가 많다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변동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sup>3)</sup>

## 3. 대체치료 없는 신의료기술, 평가 前 진료 허용(4/23)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한 신의료기술 중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이라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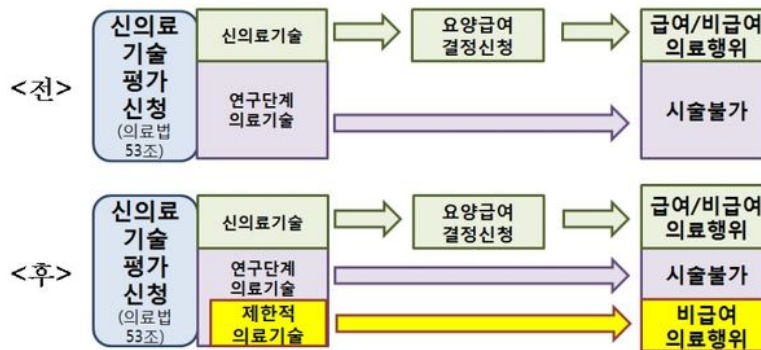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이다.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14.4.24일 기준)>**

의료기술명	대상 환자 및 질환	사용 장비
①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수술이 불가능하고 기도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폐암환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② CD4 림프구 활성[생물학적발광측정법]	심장, 동종조혈모 세포 등 이식환자에 대하여 감염 및 거부반응 위험도 측정	발광 분석기, 체외진단시약
③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과광 레이저접안경검사	맥리막 종양이 확인된 환자에 치료효과 측정	시계 조사 레이저장치
④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관절 불유합/직연유합 환자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 원심 분리기
⑤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심근경색 환자	
⑥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전병증 환자	
⑦ 혈관외과 영역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⑧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전립선암 치료효과 판정, 방광암 진단/치료효과 판정, 신장암 진단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⑨ 중앙감출술 후 복강내 온열화확요법	복막가성결핵증, 흉수암, 복막종괴증, 위암, 복막육종증	의약품 주입용 기구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하면 평가 시 5~10% 가점을 부여한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 전후 비교>**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으면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의료기술 도입 시급성과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등의 항목으로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으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취소된다.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별도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는 치료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sup>4)</sup>

## 1.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맞춤형 건강관리 ‘헬스온’ 선보여(4/21)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원장 조상헌)는 정보통신 기술과 전문가 그룹의 건강관리 노하우를 결합한 스마트한 헬스케어 프로그램 ‘헬스온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헬스커넥트(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합작회사)와 함께하는 헬스온은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손목이나 허리에 착용하는 활동량 측정기 ‘액티비티 트래커’를 통해 개인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식사 내역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다. 그동안의 건강검진 서비스가 검사와 진단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헬스온은 다음 해 건강검진까지의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보면 된다. 검진센터 방문 시 주치의가 이 데이터와 이용자의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상담을 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원할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식사관리, 운동에 대해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조상헌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 패러다임이 된 헬스케어 3.0의 시대에 발맞추어 건강관리 노하우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up>5)</sup>

## 2. 척추전문 튼튼병원 1인1개소 의료법 첫 위반(4/23)

이른바 ‘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1인1개소 의료법의 첫 위반 사례로 척추 전문 ‘튼튼병원’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됐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와 함께 MBC 피디수첩에서 심층고발된 튼튼병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128억원의 급여비 환수 조치를 내렸다는 전언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1인 1개소 규정이 강화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첫 처벌이 이뤄진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해 11월 1000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를 검찰에 대규모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료법 위반과 환수조치 결과가 내려진 것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법적응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번 검찰의 결정과 공단의 환수조치가 확정된다면 병원의 실소유주 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 게도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관련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튼튼병원 실 소유주가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개의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튼튼병원 네트워크 실제 소유주와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sup>6)</sup>

### 3. 병원협회, 1회용 수술포 비용 산정돼야(4/15)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감염 예방, 관리 차원에서 수술환자에게 쓰는 1회용 수술포에 대해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땅히 실거래가를 적용해 별도 수가를 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때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그 비용을 포함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도 비용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2000-73호)에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병원협회는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 비용보전을 못 받는 만큼 병원의 손실이 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sup>7)</sup>

## 약계 뉴스

### 1. '시장형 실거래가제' 결국 폐지...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전환(4/22)

그동안 '1원 입찰' 논란을 빚어왔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 병원은 싼 값에 약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처방약 사용량을 줄여야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병원들이 지나치게 할인 구매를 강요하면서 제약업계에선 '1원 낙찰'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으며, 정부는 제약·병원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조항을 삭제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약 사용량 감소 인센티브를 더한 형태이다. 병원이 약 값을 낮춰 구매한 경우(저가구매) 차액의 20%(기본지급률),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해 외래 뿐 아니라 입원 처방 품목을 줄이거나 저가약 처방을 늘린 경우(약 사용량 감소)도 기준과 비교해 차액의 35%(기본지급률)를

정부가 병원에 준다.

약 사용량 감소 수준 평가에는 처방 품목 수·저가약 처방 횟수 등 처방행태를 종합해 상대비교한 약 품비고가도지표(PCI)를 활용하는데, 약 처방 절감 노력이 부족해 PCI가 2이하인 병원의 경우 아무리 저가구매 금액이 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PCI 수준에 따라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에 곱해지는 지급률을 각 10~30%, 10~50% 범위에서 차등할 수 있게 했다.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에 대해서만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sup>8)</sup>

## 2. 약국 복약지도 위반시 과태료 30만원(4/16)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법 시행규칙·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복약지도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을 각각 30만원으로 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약지도서의 양식에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저장방법 등 기재해야 할 사항과 표시 방법을 규정했다.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를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고시로 그 개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사 직능에는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약사,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를 삭제했다.<sup>9)</sup>

## 3 대응제약, 진도군약사회에 '우루사' 등 의약품 전달(4/21)

대응제약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인양 현장에 지원할 의약품을 대한약사회측에 긴급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응제약은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약사회로부터 피로회복제 '우루사'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우루사를 비롯해 '임팩타민', '대응화이팅C' 등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진도군약사회에 전달했다.

대응제약은 "정부기관, 제약협회 등과 협조하여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의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sup>10)</sup>

## 1. 해고 논란 보라매병원 임신부 간호사 복직(4/23)

임신한 간호사 해고 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 보라매병원이 간호사를 원직 복직하기로 했다. 공공 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해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지난 18일 병원과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내달 병원 수술실로 원직 복직하는 것과, 신규채용으로 하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연대 조직들은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됐던 임신부 비정규직 해고 간호사의 복직을 위해 5개월간 병원,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등 투쟁을 진행한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병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도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sup>11)</sup>

## 2.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탄핵(4/19)

의료계 내분이 극에 치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회장이 대의원회에 의해 탄핵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는 총 242명 재적대의원 가운데 171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최종 투표는 178명이 참여했다. 무기명 기표소 투표 결과 136명이 불신임에 찬성, 반대는 40표로 불신임 안건이 통과됐다. 기권은 2표다.

회장 불신임 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환규 회장이 의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의협은 '회장 유고' 상황을 맞게 된다. 정관은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상임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신 수행한다.

의협은 회장대행 체제 속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오늘 탄핵됨에 따라 전체 임기 3년 중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현행 의협 정관은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총회에 상정돼 가결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장동익 전 회장의 경우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임총 본회의가 표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경만호 전 회장은 불신임안이 아닌 '사퇴권고안'이 2011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안건 폐기됐다. 이에 따라 노환규 회장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회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이 박탈되는 첫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sup>12)</sup>



### 3. 고용노동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이행 실적 발표(4/15)

지난 한 해 동안 국립대병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도 전환 실적을 올렸으나 계획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관명		전환계획	전환실적	실적비율
교육부	강원대학교병원	22	48	218%
	경상대학교병원	48	60	125%
	부산대학교병원	40	29	73%
	서울대학교병원	103	155	150%
	전남대학교병원	8	83	1038%
	전북대학교병원	92	276	300%
	제주대학교병원	6	7	117%
	충남대학교병원	114	111	97%
	충북대학교병원	11	10	91%
	경북대학교병원	64	64	100%
기관명		전환계획	전환실적	실적비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	0	
	국립암센터	10	2	20%
	국립중앙의료원	0	0	
	국민건강보험공단	16	9	5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	5	8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3	181	9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0	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	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3만1782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들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실행했다. 대다수 전환 계획을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그동안 병원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돼 왔으며, 기관 소속 외 파견 및 용역직 사안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직무·보수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sup>13)</sup>

### 4.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4/11)

삼성전자가 의료기기사업 육성에 전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대학교에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의료기기산업특성화 대학원이 생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11일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

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병원 연계 등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교육과정 구성 등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올해 성균관대에 3억원을 비롯해 연차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17년까지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 성균관대도 오는 2017년까지 장학금 및 시설확보 등을 위해 약 21억원의 현금과 현물을 투자한다.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내에 설치되며 사업협약 체결 및 학과 개설, 신입생 모집(20명)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첫 학기를 시작한다. 성균관대는 임상의학을 기반으로 전기, 전자, 기계, 재료공학 등 다학제적 융합교육, 국내외 인턴십 과정, 산업체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동국대학교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sup>14)</sup>

- 1) ‘건보공단 ‘537억 담배 소송’ 불붙었다’, 2014.4.14., <한겨레>
- 2)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급여비 지급 ‘중단’’, 2014.4.17., <데일리메디>
- 3) ‘직장가입자 761만명 4월 건보료 평균 12만원 더 낸다’, 2014.4.18., <매일경제>
- 4) ‘대체치료 없는 신의료기술, 평가 前 진료 허용’, 2014.4.23., <데일리메디>
- 5)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맞춤형 건강관리 ‘헬스온’ 선보여’, 2014.4.21., <라포르시안>
- 6) ‘척추전문 튼튼병원 1인1개소 의료법 첫 위반’, 2014.4.23., <데일리메디>
- 7) ‘병원협회, 1회용 수술포 비용 산정돼야’, 2014.4.15., <쿠키뉴스>
- 8) ‘시장형 실거래가제’ 결국 폐지…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전환’, 2014.4.22., <아시아경제>
- 9) ‘약국 복약지도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2014.4.16., <라포르시안>
- 10) ‘대응계약, 진도군약사회에 ‘우루사’ 등 의약품 전달’, 2014.4.21., <라포르시안>
- 11) ‘해고 논란 보라매병원 임신부 간호사 복직’, 2014.4.23., <데일리메디>
- 12)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탄핵…의협 역사상 첫 사례’, 2014.4.19., <파이낸셜뉴스>
- 13)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이행’, 2014.4.15., <데일리메디>
- 14) ‘의료기기사업 뛰어난 삼성…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 2014.4.11., <라포르시안>